

서울고등법원

춘 천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건	(춘천)2020나13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1. A 2. B 주식회사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승완
피고,피항소	주식회사 E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5가합5880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춘천)2017나105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변론종결	2020. 12. 21.
판결선고	2021. 1.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2,359,9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85,000,000원, 원고 C에게 65,000,000원, 원고 D에게 1,827,188,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6. 10. 12.부터 2021. 1.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42,359,900원,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한다)에게 185,000,000원, 원고 C에게 65,000,000원, 원고 D에게 1,827,188,700원(2017.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1,863,957,051원'은 오키로 보인다)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2016. 10.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2017. 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오키로 보인다)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제1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3. 1. 30. 접수 제4549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D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제1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 제2 예비적으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30. 체결된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을 42,359,9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2,359,9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F과 N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30. 체결된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을 18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F과 N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30. 체결된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을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C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F과 N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30. 체결된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을

1,827,188,700원(2017. 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1,863,957,051 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D에게 1,827,188,700원(2017. 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1,863,957,051원'은 오기로 보인다)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및 제1,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피고는 2013. 5. 1. L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당시까지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책임지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F은 2011. 8. 원고 D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7억 3,900만 원에 도급하였고, 원고 A, B, C은 원고 D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았다. 따라서 원고 D은 F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고, 원고 A, B, C은 2015. 2. 5. 원고 D으로부터 원고 D의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씩을 양수하였으므로 F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갖는다. 또한 원고 A, B, C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인 F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을 갖는다. F과 피고는 K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 이자 K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고, K이 F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F의 유일한 자산이었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N 등으로 순차 변경했다가 최종적으로 피고로 변경한 결과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위와 같이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으면서 F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F과 별개의 법인임을 내세워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들의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현존하는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들이 실제 투입한 공사비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 D의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 D은 스스로의 출재와 노력으로 이 사건 건물의 기둥·주벽·지붕 등을 완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다. 원고들의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 D은 F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고, 원고 A, B, C은 F에 대해 양수금채권 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F과 N가 2012. 4. 30. 체결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은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채권액 한도 내에서 위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액배상으로 각 채권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및 각 하도급계약의 당사자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3045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11963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0768 판결 등 참조).

원고 D이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면서 명의대여자인 I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K과 원고 A, B, C은 원고 D와 I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

하는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원고 D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
 이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및 각 하도급계약에서 I이 아닌 원고 D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점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D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고,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하도급인이라고 해석된다.

나. 피고와 L 사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피고가 2013. 5. 1. L을 수급인으로 하여 새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공사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기타사항으로 '현재까지의 공사비 미지급금
 등은 건축주가 책임지기로 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약정은 피고와 L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으로서 수급인인 L이 공사현장
 을 인계받아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 겸 건축주인 피고가 현장정리 등에 대한 책
 임을 진다는 취지일 뿐이고, 원고들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또는 F이나 I의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인수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위 기재내용에 근거하여 위 도급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법인격남용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 대하여

1) 원고들의 F에 대한 채권

가) 인정사실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D은 2015. 2. 5. F에 대한 자신의 공사대금채권 중 42,359,000원을 원고 A에게,
 185,000,000원을 원고 B에게, 65,000,000원을 원고 C에게, 430,000,000원을 AC에게,
 340,800,000원을 AD에게, 114,110,380원을 AE에게, 53,000,000원을 AF에게 각각 양도하
 였고, AG에게도 50,000,000원을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AG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2) AC, AD, AE, AF, AG는 2015. 3. 16.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포

함한 소를 춘천지방법원 2015가합5460호로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감정인 AH은 2016. 4. 23. 원고 D이 I의 명의를 차용하여 F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하수급인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공사의 총 공사비를 2,965,004,835원으로 산정한 감정서를 제출하면서, 그 중 AC이 수행한 공사의 공사비를 276,081,088원, AD이 수행한 공사의 공사비를 1,633,196,875원, AE이 수행한 공사의 공사비를 112,400,027원, AF이 수행한 공사의 공사비를 29,406,769원으로, AG가 수행한 공사의 공사비를 55,499,109원으로 산정하였다. 이후 감정인 AH은 2차에 걸쳐 위 사건의 제1심법원으로부터 감정결과에 관한 사실조회를 받고 2016. 10. 10. 최종적으로 총 공사비를 2,907,347,649원으로, AE이 수행한 공사의 공사비를 91,511,192원으로 각각 수정한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 이후 위 AC 외 4인은 2016. 10. 11. 피고에 대한 청구금액을 AC 276,081,088 원, AD 340,800,000 원, AE 91,511,192 원, AF 29,406,769 원, AG 50,000,000원으로 수정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6. 12. 7. 위 AC 외 4인의 청구금액, 위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피고가 위 AC 외 4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가 AG에게 공사대금 40,198,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공사대금으로 AC에게 276,081,088원, AD에게 340,800,000원, AE에게 91,511,192원, AF에게 29,406,769원, AG에게 15,301,109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을 포함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제1심판결 중 피고와 AC, AD, AE, AF, AG 사이의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은 원고 D으로부터 각각 공사대금채권의 일부를 양수한 원고들에게 양수금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42,359,000원, 원고 B 185,000,000원, 원고 C 65,000,000원이 된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은 춘천지방법원 2015가합5460호 사건에서 감정인 AH이 F과 원고 D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원고 D의 공사비로 산정한 2,907,347,649원 중 타인에게 양도된 공사대금채권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D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AC, AE, AF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2. 5. 원고 D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양수하였으나 감

정인 AH의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서 각자가 수행한 공사의 공사비로 산정된 금액이 양수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2016. 10. 11. 위와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청구금액을 축소한 점, 이에 따라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이 2016. 12. 7. 피고가 AC, AE, AF에게 청구금액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한 판결을 선고한 점, 위 제1심판결이 쌍방의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된 점, 위 사건에서 위 AC 외 4인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과 동일한데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에서도 2016. 10.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 AC 외 4인은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서 그들이 수행한 공사의 공사비로 산정된 금액만 청구하는 입장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AC, AE, AF이 원고 D으로부터 양수한 공사대금채권액 중 위 사건의 감정인 AH의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서 그들이 수행한 공사의 공사비로 최종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원고 D의 채권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AC, AE, AF 과 원고 D 사이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F이 원고 D에게 지급할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AH이 산정한 총공사비 2,907,347,649 원 중 원고 A이 양수한 42,359,000원, 원고 B이 양수한 185,000,000원, 원고 C이 양수한 65,000,000원, AC이 양수한 430,000,000원 중 AH의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서 AC이 수행한 공사의 공사비로 산정된 276,081,088원, AD이 양수한 340,800,000원, AE이 양수한 114,110,380원 중 AH의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서 AE이 수행한 공사의 공사비로 산정된 91,511,192원, AF이 양수한 53,000,000원 중 AH의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서 AF이 수행한 공사의 공사비로 산정된 29,406,769원은 제외되어야 하고, AG의 경우 원고 D과 사이에 채권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원고 D이 AG의 경우 공사비 50,000,000원만 수령하면 만족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수령할 공사대금에서 위 50,000,000원을 제외하고 청구하고 있으므로 F이 원고 D에게 지급할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하기로 한다. 이에 따르면 F이 원고 D에게 지급할 금액은 1,827,188,700원[= 총 공사비 2,907,347,649 - -(원고 A 42,359,900원 + 원고 B_185,000,000원 + 원고 C 65,000,000원 + AC 276,081,088원 + AD 340,800,000원 + AE 91,511,192원 + AF_29,406,769원 + AG 50,000,000원)]이 된다.

2)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서도 F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가)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등 참조).

이때 기존회사의 자산이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로 바로 이전되지 않고,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대가로 기존회사의 다른 자산을 이용하고도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직접 자산이 유용되거나 정당한 대가 없이 자산이 이전된 경우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나 목적, 기존회사의 경영상태, 자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다른 회사에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인정사실

- (1) F은 2011. 8. I의 명의를 차용한 원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 D은 원고 A에게 목공공사를, 원고 B에 데크공사를, 원고 C에게 비계공사를 각각 하도급하였다.
- (2) 원고 A, B, C과 다른 하수급인들이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2. 3. 2.경 I과 원고 D이 모두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 (3) 한편 K은 2006. 9. 27. 부동산 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F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11. 7. 18.에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

영하였다. 피고는 2012. 1. 1.부터 2016. 8. 31.까지 재산세, 법인세 납부내역이 전혀 없다.

(4) 원고 D과 F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F과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이었다. N는 F이 작성해 준 각서를 기초로 F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2. 4. 30. N와 S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2012. 11. 1. 피고와 S로, 2012. 11. 22. 피고로 각각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 10,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환송 전 원심 법원의 원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K이 F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고를 이용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F의 채권자는 F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 F과 피고는 그 설립목적과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다. F의 유일한 자산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였는데, 확정판결에 따라 건축주 지위가 N에 이전되었다가 다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N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를 양수할 무렵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F과 마찬가지로 K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2) 피고가 N로부터 원래 F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를 양수하면서 N에 F의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등 실질적인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가 N로부터 F이 차용금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를 양수하면서 F에 어떠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결과 F은 별다른 대가 없이 유일한 자산을 상실하게 된 반면 피고는 별다른 대가 없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고, K은 F 대신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N로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가 이전될 당시 K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3)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2. 3. 2. I과 D이 모두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러자 K은 원고들을 비롯한 하수급인들을 불러서 공사대금이 얼마나 미지급되었

는지 확인서를 받았고, AC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계약금액 6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내용의 2011. 9. 15.자 도급계약서를 F 명의로 작성해주고 AG에게도 유사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이에 관해 K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정299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질적으로 I의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같이 끌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AC, AG에게 공사를 같이 끝내자고 하면서 계약서를 써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K의 주된 관심사는 일단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는 데 있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된 후 2013. 5. 1. L을 수급인으로 하여 새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계약서에 기타사항으로 '현재까지의 공사비 미지급금 등은 건축주가 책임지기로 한다'고 기재하였는데, 이 부분의 의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급인인 L이 공사현장을 인계받아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 겸 건축주인 피고가 현장정리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일 뿐이고, 원고들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또는 F이나 I의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인수약정은 아니었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L과 새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들에게 F이나 I의 공사대금채무를 이행할 의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N로부터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F이 차용한 자금이 사용되는 등 F의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유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지만,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K이 F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고를 이용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F의 실질 사주인 K이 I의 명의를 빌린 원고 D의 요청으로 원고 D에게 액면금 합계 8억 300만 원의 약속어음과 액면금 합계 5억 4,600만 원의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주거나 할인을 알선하여 주었고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약 10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I은 약 5억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를 포기하였고 위 어음과 당좌수표가 부도가 났으므로, 피고는 I 또는 원고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 D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배상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 D이 I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D과 I이 2012. 3. 2. 부도가 나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가 원고 D이 운영하는 AI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합계 8억 300만 원의 약속어음과 액면금 합계 5억 4,600만 원의 당좌수표 사본을 제출한 사실, 위 약속어음 중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 및 액면금 3억 5,000만 원의 당좌수표 1장에는 F 앞으로 배서가 되어 있는 사실, 원고 D은 인천지방법원 2015년 형제28639호로 K을 고소한 사건에서 2011. 12. 8.경 AI 주식회사 명의로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과 액면금 3억 5,000만 원의 당좌수표 1장을 K을 보증인으로 하여 AJ에게 할인받는 방식으로 AJ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K은 위 사건에서 원고 D이 이와 별도로 2011. 11. 25.경 자신에게 AI 주식회사 명의로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3억 원을 융통해 달라고 부탁하여 자신은 AK에게 할인을 부탁하였고, AK이 법무사를 통하여 3억 5,000만 원을 AI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K이 하도급업체에게 약 10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D이 I의 명의를 빌려 수행한 공사의 공사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907,347,649원에 이르며,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D이 F, K 또는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는지, 채무를 부담한다면 부담하는 채무의 액수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F의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또는 양수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에게 42,359,900원, 원고 B에게 185,000,000원, 원고 C에게 65,000,000원, 원고 D에게 1,827,188,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0.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각주1>인 2021. 1.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각주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금액을 전부 인용하는 이상 원고 D의 제1 예비적 청구 및 원고들의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앞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복형(재판장) 이재찬 이건희

별 지

부동산 목록

원주시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6층
의료시설(병원)및 근린생활시설
1층1300.76㎡
2층1506.67㎡
3층1459.78㎡
4층1222.38㎡
5층1238.86㎡
6층 208.51㎡
지하1층 2125.80㎡
지하2층 2288.99㎡

각주1: 제1심판결 및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었고, 환송판결은 피고의 법인격남용 여부에 관하여 추가 심리 후 판단하라는 취지로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으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99다4975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각주2: 제1심 변론종결일이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인 2019. 6. 1. 이전인 2016. 10. 12.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

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를 적용한다.